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 4 회 변경)

2015. 3. 3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주식회사 대한항공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 의)	2
제 3 조 (협약의 구성)	5

제 2 장 기본약정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6
제 6 조 (본 시설물의 귀속)	6
제 7 조 (위험부담)	6
제 8 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7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 9 조 (총사업비)	7
제 10 조 (총사업비의 변경)	7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8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9
제 13 조 (공사기한)	9
제 14 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9
제 15 조 (권한의 위탁)	10
제 16 조 (보험가입)	10
제 17 조 (민원처리)	10
제 18 조 (안전관리)	10
제 19 조 (준공확인)	11
제 20 조 (임대 및 운영사항)	12

제 21 조 (유지관리)	13
제 22 조 (운영비)	14

제 4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23 조 (실질사업수익률)	15
제 24 조 (사용료)	15
제 25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16
제 26 조 (최초사용료)	16

제 5 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 27 조 (불가항력 사유)	17
제 28 조 (책임부담)	18
제 29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18
제 30 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18

제 6 장 협약의 종료

제 31 조 (협약종료)	18
---------------------	----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 32 조 (분쟁의 해결)	22
-----------------------	----

제 8 장 비밀 유지

제 33 조 (비밀유지)	22
---------------------	----

제 9 장 기 타

제 34 조	(자금의 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23
제 35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23
제 36 조	(공사에 관한 협약)	23
제 37 조	(준거법)	23
제 38 조	(언어)	24
제 39 조	(본 협약의 승계)	24
제 40 조	(서면통지)	24
제 41 조	(본 협약의 효력)	25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26
부록 2	총사업비	26
부록 3	운영비 총괄표	26
부록 4	예상운영수입	29
4-1	제1회 변경	29
4-2	제2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0
4-3	제4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1
부록 5	미래현금흐름	32
5-1	제1회 변경	32
5-2	제2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4
5-3	제3회 변경(교통유발부담금 반영)	36
5-4	제4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40

실시협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와 주식회사 대한항공간에 1999년 1월 6일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구 협약이라 칭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 협약한다.

- 1999년 1월 6일 실시협약 체결
- 제1회 변경(2001. 3. 9) :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99년 3월 31일 개정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1999년 7월 9일 고시된 '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반영
- 제2회 변경(2005. 7. 25) :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반영
- 제3회 변경(2007.11.19)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별첨 참조) 반영,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6.6.30 대통령령 제19593호)」 일부개정에 따라 주무관청 변경(항공안전본부⇒서울지방항공청)
- 제4회 변경(2015.3.31) : 2008.12.26 및 2011.12.31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반영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본 협약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수도권 신공항 항공기정비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A(이하 “항공기정비시설A”라 칭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주)대한항공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로서 본 협약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 협약에 따라 본 시설물의 최초 공사를 시작한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물의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공사착수일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협약에 따라 실제 본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 2000년 4월 30일을 의미한다.
5. 공항개항기준일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예정일인 2001년 1월 1일로서 실제 공항개항일까지 공항개항 지연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항공기정비시설A 시설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8.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9. 사용료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항공기정비시설 A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10.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1.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3. 본 시설물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시설을 말한다.
14.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사업을 의미한다.
15. 본 사업기간 :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6.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주)대한항공을 본 사업에 관한 본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7. 본 협약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8. 본 협약 당사자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19.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8. 10.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항공기정비시설A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20. 사업수익율 : 본 사업에 대해 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기본계획 상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21.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9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수촉법 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시공사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5.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237호(1998. 7. 23)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항공기정비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완공일 : 본 사업시행자가 최종실시설계에 부합하도록 본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본 사업시행자의 최종준공 확인을 신청하기 전날을 의미한다.
28. 운영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9.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사용료 산정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0. 인천국제공항 :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건설중인 신공항을 의미한다.
31.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협약상 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한·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본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32.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

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33.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본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 34.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 35. 제반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 36.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 37.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 38.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등 포함)을 의미한다.
- 39. 항공기정비시설A : 항공법 제10조 2호 각목에 규정된 '항공기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 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작업에 사용되는 공항구역 내에 있는 정비공간 및 필요한 시설(항공기 run-up용 브라스트웍스 포함)을 말한다.
- 40. 항공기정비시설 사용료 : 본 사업시행자가 항공기정비시설A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 항공기정비시설A 시설물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769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구성)

항공기정비시설A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는 본 실시협약서 및 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와 기본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주)대한항공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설물 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무상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시설물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제5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 제4조제3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4조제4항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관리운영권 등록부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45일을 연장하여 2032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제6조 (본 시설물의 귀속)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부담)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사업기간동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1998년 7월 23일 불변가 기준 60,215백만원으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 부록 2와 같다. 단, 브라스트웬스 공사비는 제외한다.
- ②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54,826백만원으로 하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공종별 수량 및 단가가 명기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총사업비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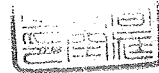
- ① 항공기정비시설 A 건물외벽 중심선 3m부터 주관로까지의 상·하수도 시설, 오수관로 시설,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열공급시설 등 제반공급시설(유틸리티)공사를 본 사업시행자 또는 본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여 본 지역에서 함께 사용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자와 배분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분담기로 협의 결정할 경우에는 그 분담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② 본 협약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사전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정부가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 (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3. 법규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④ 위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따른다.

제 11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항공기정비시설A의 시설규모는 39,696㎡(건축연면적)로 하되, 본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제시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본 사업신청자가 신청하여 결정된 시설규모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수축법” 제7조의 제3항에 의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행정절차 추진)

민간투자법 제16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사기한)

- ① 본 사업의 공사기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사유, 정부의 귀책사유 등 기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1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장비의 설치 등 시설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권한의 위탁)

① 정부는 본 사업의 건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2. 본 협약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4. 공사 중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의 지시
5.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지도·감독사항
6. 기타 본 협약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

② 위 제1항에 정한 사항에 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를 보장한다.

제 16조 (보험가입)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7조 (민원처리)

본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등 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 18조 (안전 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대로 안전관리를 하되 추후 보완할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르며, 감리전문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운영기간 중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9조 (준공 확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완공일 45일전까지 확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1개월 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항공기정비시설A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임대 및 운영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항공기정비시설A 본래의 용도 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항공기정비시설A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본 시설물은 임대를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업체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임대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제출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즉시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임대희망 국내·외 업체를 파악(문서확인)하여 임대조건, 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포함한 임대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업체 선정기준의 작성·제출, 임대희망업체 파악, 가계약 체결 및 임대계획 제출 등을 예외로 한다.
 5. 장비설치 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만료 후 설치된 장비의 처리는 설치자가 자비로 철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임 사용자와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될 경우에는 협의 결과에 따른다.
 6.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 선정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보험가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시행자는 임대 등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이외에 본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시설물에 대한 본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시설사용자가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 및 당해 영업권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정비시설A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근거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용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당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당해 기본시설물 외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 이전, 폐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사업시행자는 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법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유지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지침서가 첨부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획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2종 시설물(특수구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2.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와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관리대장(건축분야)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시행자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수시로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설계도서(원본)를 국토교통부 도면관리에규를 준용하여 관리 후 인계하고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비)

- ① 토지사용료 및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는 1998년 7월 23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23,357백만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첨 부록 3과 같으며, 운영기간중의 보험료는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토지는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개시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운영개시후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며, 납부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별도협의를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항공기 RUN-UP용 브라스트 시설물이 설치될 AIR-SIDE 지역의 토지는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운영기간 중 법인세 등 관련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 반영한다.

제 4 장 사업수익율 및 사용료

제23조 (실질사업수익율)

본 협약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산정을 위해 적용할 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율(IRR) 5.04%로 하고 무상사용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료)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되 시

설사용자와 별도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항공기정비시설A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년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항공기정비시설A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은 제22조 제③항에 의거 사용료로 조정하며, 그 내역은 별첨 부록 4-2와 같다.
- ④ 2008. 12. 26 및 2011. 12. 31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은 제22조 제③항에 의거 사용료로 조정하며, 그 내역은 별첨 부록 4-3와 같다.

제25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사항은  1의 함수관계식에서 산정 한다.
- ② 제10조(제10조제3항제3호 제외)에 따르는 조정과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 후에 천재지변, 정부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을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0조제3항제3호로 인한 변경은 사용료에서 조정한다.
- ④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이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의 정책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정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30년을 초과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최초사용료)

최초의 사용료는 별첨 부록 1의 산식에 의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5일 전까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용료는 1998년 7월 23일 불변가 기준으로 별첨 부록 4와 같다. 단, 사업수입의 합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시설용도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변동률은 별첨 부록 4의 사용료에 운영개시일 1개월 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3. 별첨부록1의 사용료 산정 산식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총사업비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4. 제24조 제③항에 따른 사용료의 현재가 산정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제24조 제④항에 따른 사용료의 현재가 산정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5 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27조 (불가항력 사유)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불가항력 사유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 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제28조 (책임부담)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제29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약의 종료

제31조(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 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협약의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0조에 따른 협의 개시 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27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사전 종료하고 그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를 대치할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 이하 동일)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본 협약이 민간투자법 제47조 또는 위 제2항1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⑤ 위 제2항 3호 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위 제2항 2호 또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⑦ 본 조에 정한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 시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율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⑧ 본 협약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대주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동일조건으로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한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대주와 사업시행자간의 대출약정서상의 제반 대출조건을 말한다.) 본 제8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동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 ⑨ 위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 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 지급금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결과를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위 서면통보 후 해당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⑩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⑪ 본 협약이 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본 시설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기간 만료일에 항공기정비시설A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항공기정비시설A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32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제 8 장 비 밀 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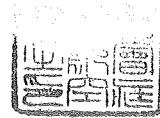
제33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9 장 기 타



제34조 (자금의 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 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한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 (공사에 관한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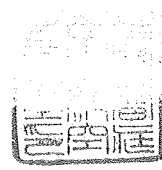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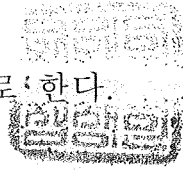
- ①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구협약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8항 까지와 같다.
- ② 제2회 협약변경에서는 본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공사에 관한 협약"은 생략한다.

제37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38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제39조 (본 협약의 승계)

본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를 승인한다.

제40조 (서면통지)

- ①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 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정부에 대한 통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참조: 공항지원과

전화: 032 - 740 - 2227

팩스: 032 - 740 - 2239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 대한항공빌딩)

참조 : 정비기획부 시설장비팀장

전화 : 02 - 2656 - 3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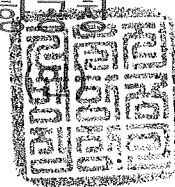
팩스 : 02 - 2656 - 8120

제41조 (본 협약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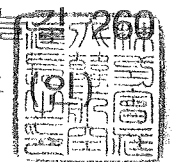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첫 번째 날자에 본 협약서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5. 3. 3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 장 황 성 연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표이사 지 창 훈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사용료 산정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을 기준으로 한다.

$$\sum_{t=1}^n \frac{CC_t}{(1+r)^t} = \sum_{t=1}^N \frac{(OR_t - OC_t)}{(1+r)^t}$$

여기서,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_t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_t : 매년도 운영수입

OC_t : 매년도 운영비용

r : 본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